

[별표 3]

조사보고서 수록대상 화석표본 보관·전시 가능 기관(제15조 제2항 관련)

구분	대 상 기 관
보관·전시 대상기관	<p>(1) 국립문화유산연구원, 한국전통문화대학교, 국립고궁박물관, 국립해양유산연구소, 국립중앙박물관, 화석표본이 발굴된 당 해 시·도</p> <p>(2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의한 학교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·연구기관, 「과학관육성법」에 의한 과학관</p>
보관·전시의 위임 또는 위탁가능 기관	<p>(1)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소속기관, 국립민속박물관, 국·공립 및 사립대학교의 부속박물관</p> <p>(2) 당해 화석이 발견·발굴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박물관 및 전시관</p>